

가

APPRAISAL REPORT

	(2025 503687)
가	()16-251105-301

가	가	(
가)		, (改作),
(轉載)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	가	()

가	(\72,000,000. -)		
		가	
	--		8
()	(2025 503687)	가	가
		가	--
		2025.11.13	2025.11.10 - 2025.11.13
			2025.11.17

가	(公簿)()			가
		(m ²)	(m ²)	가
		1	1	- 72,000,000
				\72,000,000. -

가	가	가
가		()
	가	()

가

: 1

			?		(㎡)		가	
1	1. 1	125-16		3				
	[]			1	102			
				2	102			
				3	102			
	7 27 (,)					22.55		
	"	125-16		2		286.8		
				()				
				3 301	46.08	46.08<	72,000,000	가
				1	47.8	47.8>		8.678㎡
					----- 286.8		50,400,000 21,600,000	
							\72,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비래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주용도: 다세대주택, 명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 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하 "구분건물" 이라 한다)] 제3층 제301호로서, 대전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대상 물건

(1) 전체 부동산 개요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5-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7번길 27 (비래동, 보성빌라))				
명칭 동/층/호수	통칭 제2동 제3층 제301호				
건물 개 황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m ²)	연면적(m ²)	층수 (지하/지상)
	대	2종일주	286.8	328.55	-1/3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단지규모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다세대주택	1989.11.01	동수	세대/호
				1	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평가대상물건 개요

기호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m ²)		공용면적 (m ²)	계약면적 (m ²)	대지권 (m ²)	비고
		공부	사정				
1	-/3/301	46.08	46.08	8.678	54.758	47.8	통칭 2동 다세대주택
합계		46.08	46.08	8.678	54.758	47.8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11월 10일 ~ 2025년 11월 13일 입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타 참고사항

- 본건의 위치확인은 현 점유부분 등에 의거하였습니다.
- 본건은 구분소유 물건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 2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며, 견고한 벽체로 되어있습니다.
-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건물로서, 토지의 소유권·대지권 과 구분건물이 일체로 하여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나, 귀 요청에 의거 소유권·대지권 해당 토지와 건물의 배분가격을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하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감정평가기준위원회」에서 제공된 배분비율(법원감정평가실무(2021.2)) 등을 참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입지조건과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이용 및 관리상태, 위치별·층별 효용도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인근 동·유형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동·유형의 수익사례 포착이 어려운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별도 산정치 않았습니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비래동 125-1*	-/1/102	46.08	다세대주택	79,000,000	1,710,000	2024.06.12
							1989.08.21
B	비래동 125-2*	-/3/301	46.08	다세대주택	34,000,000	738,000	2025.04.08
							1990.04.13
C	비래동 125-*	-/2/201	46.08	다세대주택	49,000,000	1,060,000	2025.08.27
							1990.04.13
D	비래동 125-*	나/3/302	44.28	다세대주택	62,000,000	1,400,000	2024.04.24
							1989.11.18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

상기 사례 중 본건 인근에 소재하며 본건과 물적유사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A)"를 "기호(1)"의 비교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입니다. (1.000)

3. 시점수정

사례 기호(A) : 본건 기호(1)

본건은 구분건물(다세대주택)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본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대전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발표지수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조사발표)

구 분	적 용 치	비 고
사례의 매매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100.5	2024.05
기준시점 당시 매매가격지수	99.4	2025.09
시점수정치	0.98905	99.4 / 100.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

[본건 기호(1) / 사례 기호(A)]

조 건	항 목	비교치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0.92	층별 효용도에서 본건이 열세합니다.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 별 요 인 비 교 치		0.920	-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단가 산정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710,000	1.000	0.98905	0.920	1,555,973	1,56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결정단가 (원/㎡)	산출가액 (원)	시산가액 (원)
1	-/3/301	46.08	1,560,000	71,884,800	72,000,000
합 계		46.08	-	-	72,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이용상황	평가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사용승인일	
1	비래동 12*-2*	나동/3층/301호	39.21	다세대 주택	74,000,000	1,890,000	2025.08.25	법원 경매
							1993.08.06	
2	비래동 12*-*	2층/202호	49.68	연립주택	62,000,000	1,250,000	2024.11.20	법원 경매
							1983.11.25	

※ 출처: 감정평가정보(KAPA HUB PLUS)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의 결정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유사물건 가격 수준, 인근 유사부동산 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를 종합 참작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4.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

감 정 평 가 액 (원)

72,000,000

가

1.	2.	3.	4.
5.	6.		7.
8.	9.	10.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비래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보성빌라 제2종 제3층 제301호(기호1)로서 본건 주위는 유사 다세대주택 및 점포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3층 중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9.11.01)

- 외 벽 : 적벽돌쌓기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 내 벽 : 벽지마감 등
- 창 호 : 샷시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거실겸주방, 욕실1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준시점 현재 현장실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주변 주민 탐문조사에 의거한 표준적 이용상황에 의거하였습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급탕,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가

1.	2.	3.	4.
5.	6.	7.	
8.	9.	10.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지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 등

본건 북동측으로 콘크리트포장도로인 세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계족산,식장산,가양비래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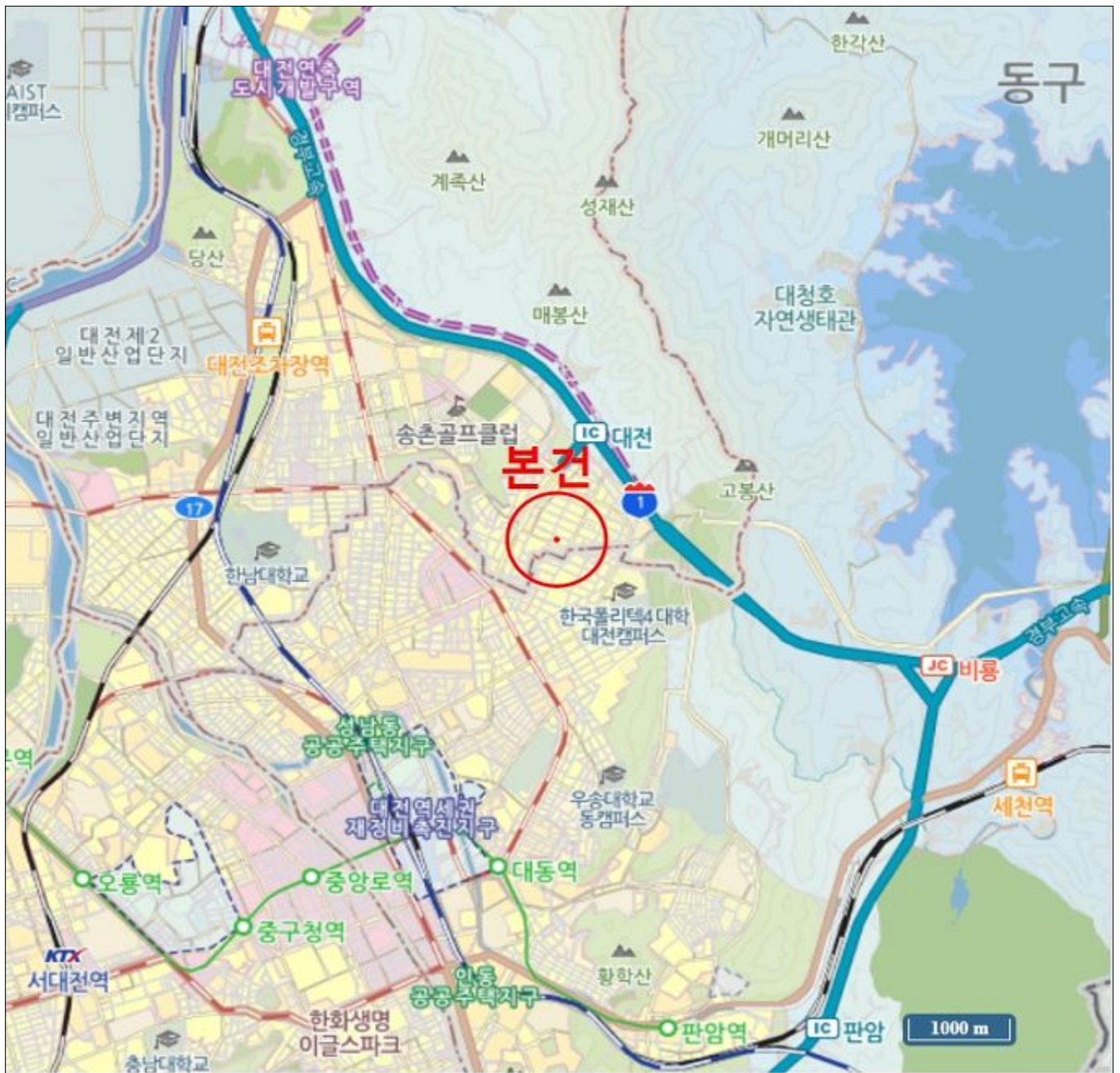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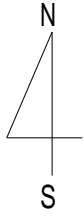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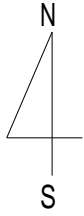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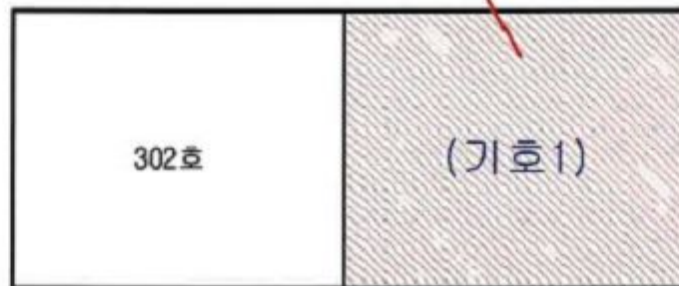


125-16 3 301



<NO-SCALE>

본건 (1) : 제30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5-16 제3층 제301호>
동칭 보성빌라 제2동



가

)330-230
E-Mail : kla01@chol.com

17 23

601

Tel. 041)576-0011
FAX. 041)573-1106

: 16-251105-301

: 2025-11-17

:

: 8

: 가

			*	

1. () 가 ,

2. 2025-11-04 『 2025 503687 』

『 (2025 503687) 』 가

: 가 1

1

()

가

가 : 16-251105-301

一 金 整 (\476,300.-)

2025-11-04 「 가 (2025 503687) 」 가가

가	\290,000.-	: 290,000.-
	138,400	: 312-85-21899
		: 3
	1,700	
	3,000	
	\433,000.-	* 1,000
가 가	\43,300	
	\476,300.-	
	\	
	\476,300.-	

473-17-002703 : () 가

가

(TEL : (041)576-0011 FAX : (041)573-1106)

이 표는 10월 1일 기준

가				
		()		
		() 가		
	가	2025 503687		
		125-16 3 301		
	가	가	가	
				가
				\
				\
	가	\.-		
		“ (%) = (가 ÷ 가) * 100 ”		
	「 가 」 5 ()			